

COVID-19

산업별

지침:

박물관, 갤러리, 동물원 및 수족관

2020년 10월 20일

이 지침은 주 전역에 걸친 부문 및 활동 개방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보건 담당자는 로컬 전염병학적 상황에 맞춘 보다 엄격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관련 로컬 개점 정책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레스토랑,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 대기령이 수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직원(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및 손님/클라이언트/방문객의 얼굴 가리개(마스크)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

본 문서는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박물관, 갤러리,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및 기타 유사한 공간 (이하 통칭하여 "박물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업소는 업소가 속한 카운티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자주색 - 광범위함 - 1등급:** 실외 운영이 허용되며 이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빨간색 - 상당함 - 2등급:** 옥내 조업이 허용되나 수용 능력의 25%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 지침의 수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황색 - 중등도 - 3등급:** 옥내 조업이 허용되나 수용 능력의 50%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 지침의 수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노란색 - 최소 - 4등급:** 옥내 조업이 전체 수용 능력에서 허용되며 이 지침의 수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카운티 등급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Blueprint for a Safer Economy\(더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보건부가 보다 엄격한 기준 및 다른 폐쇄 조치를 시행 중일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현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박물관에는 [위험 감소를 위한 업계 지침](#) 웹사이트의 기타 지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측면과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운영자는 지침의 수정 사항을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케이드 또는 게임 (가족 오락 센터 지침)
- 레스토랑, 음식 서비스, 매점 (레스토랑 지침)
- 바 (바, 브루어리 및 디스틸러리 지침)
- 기념품점 및 소매점 조업 (소매점 지침)
- 청소 용역, 관리 서비스 (제한된 서비스 지침)
- 옥외 놀이터 ([CDPH 옥외 놀이터 지침](#) 참조)

컨벤션 공간, 임대 가능한 회의실, 개인 행사를 위한 기타 장소가 있는 박물관은 대규모 모임이 특정 재개장 명령 및 지침을 통해 개편된 방식으로 또는 완전한 방식으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허락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폐쇄해야 합니다. 라이브 동물쇼 등의 공연은 중단하되, **예외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및 위생 프로토콜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콘서트 또는 개인 파티/이벤트 같은 모든 대규모 행사나 모임은 취소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재개하는 것이 허락될 때까지 연기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법령이나 규제, 단체 교섭을 비롯하여 직원의 권리 일체를 취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Cal/OSHA)의 규정과 같은 일체의 기존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적인 것이 아닙니다.¹ COVID-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공 보건 지침 및 주/지역 명령에 대한 변화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Cal/OSHA는 [COVID-19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Cal/OSHA 일반 지침 웹페이지](#)에서 더욱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사업체 및 고용주들에 대한 [지침](#) 을 통해 추가적인 요건을 제공합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에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이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PH 안면 가리개 지침](#)은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CDPH 웹사이트에서 수정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사업장마다 업무 장소별 코로나 19 예방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업무 공간 및 업무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각 사업장마다 해당 계획을 시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 [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보건부 연락처를 알아 두십시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계획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며 결함이 확인된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CDPH 지침](#) 및 지역 보건부의 지시 또는 안내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근로자의 밀접 접촉자(15분 이상 동안 6피트 이내)를 식별한 후 COVID-19 양성 근로자와 밀접 접촉자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 COVID-19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모든 직원 및 하도급 계약 직원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역 보건부에 직장 내 발생을 보고합니다. [AB 685](#)(제84장, 2020년 법령)에 따른 고용주 책임에 대한 추가 정보는 Cal/OSHA의 [강화된 집행 및 고용주 보고 요건](#) 및 [CDPH의 AB 685에 대한 고용주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의 주제

- [COVID-19](#)에 대한 정보,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중증 질병이나 사망의 [위험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 동물을 보유한 시설에서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CDC의 지침](#)을 적용하여 체온 및/또는 증상을 확인하는 등, 가정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 다음의 경우 출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열, 오한, 숨 가쁨, 호흡곤란, 근육통,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손상 증상이 나타남, 인후통, 코막힘, 콧물, 구역질, 구토, 설사와 같이 [CDC가 발표한](#) 코로나 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또는
-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또는
-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 19로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고 잠재적인 감염자로 고려되는 직원(예: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음).
- 직원이 COVID-19 진단 후에는 [COVID-19 진단후 직장 또는 학교 복귀에 대한 CDPH 지침](#)을 충족한 후에만 직장으로 복귀.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정신혼란이나 창백한 입술 또는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메탄올](#) 이 함유된 손 소독제는 독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와 성인 모두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근무시간 및 근무 외 시간 모두에서의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섹션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안면 가리개(마스크)의 적절한 사용:
 - 안면 가리개는 개인 보호 장비(PPE)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덮어야 합니다.
 -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사용 또는 조절 전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독립 계약자, 임시직, 자원봉사자, 그리고 해당 시설의 기타 모든 유형의 근로자들은 코로나 19 예방 정책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수 용품과 개인 보호 장비(PPE)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 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가족 제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의거한 근로자의 병가 권리를 포함하여, COVID-19에 대한 병가 및 근로자 보상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교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안내원, 인턴,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체온 및/또는 증상 선별 검사를 제공하십시오.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택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선별 검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 경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기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CDC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프거나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및 방문객은 자택에서 머무를 것을 권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눈 보호 장비, 장갑 등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예: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만진 품목을 다루는 직원). 직원은 체액으로 오염된 물품을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고객 또는 동료로부터 항상 6피트 이내에 있어야만 하는 직원은 안면 가리개 외에 2차 방벽 (예: 안면 보호대 또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손님과 6피트 이내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실내 및 실외의 모든 환경에서는 시설 전체에서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은 즉시 시설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CDPH 안면 가리개 지침](#)에 명시된 대로 안면 가리개 착용이 면제되는 고객의 입장을 허용합니다.
- 박물관은 사람들이 먹거나 마시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안면 가리개(마스크)를 사용해야 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얼굴을 만지지 말고, 최소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입구에, 전략적이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그리고 예약 확인서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미리 손님에게 안면 가리개를 가져오라고 상기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DPH 안면 가리개 지침](#)에 명시된 안면 가리개 착용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구내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안면 가리개 없이 도착하는 고객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고객 및 방문객은 도착한 즉시 체온 및/또는 증상에 대한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먹거나 마시지 않는 중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단일 고객/일행 중에서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손님에게 적용되는 출입 조건에 대한 일련의 규정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 입구에 게시하십시오. 이 규정에는 손 소독제 사용, 방문 동안 얼굴 가리개(마스크) 착용, 직원 및 다른 손님/그룹과의 물리적 거리 유지, 불필요한 표면 접촉 자제, 현지 보건부 연락처, 그리고 서비스 변경에 대한 안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규정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픽토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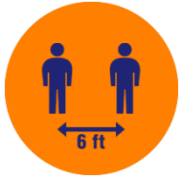


환기,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

- 가급적이면 고효율 휴대용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건물의 공기 필터를 가능한 최고 효율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며, 모든 업무 공간 및 기타 옥내 공간에 외부 공기 유입 양을 늘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가능하면 서로 다른 가구 간에 최소 30분 정도 실내 공간을 적절하게 환기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가급적 활동 예약에 시차를 두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내 환경에서 공기를 통한 질병 전염에 대한 실내 공기 질 및 환기 지침의 최신 정보는 [CDPH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가로대, 난간, 플래카드, 상호 소통식 전시물, 조명 스위치, 문 손잡이 등과 같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지면과 가까운 창문 섹션과 펜스 기둥 같이 소아가 접촉할 가능성이 더 높은 표면을 파악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및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직원 또는 대중이 사용하거나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실외 및 실내 영역을 철저히 청소합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및 공용 업무 공간 중 사람이 붐비는 공간(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과 출입구 공간(난간, 계단, 엘리베이터 버튼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전화기, 태블릿, 양방향 무전기, 기타 작업 용품 또는 사무실 장비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이와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반드시 교대 시간 또는 사용한 후후에 적합한 세정제로 표면을 소독해 주시고, 복사기, 팩스, 프린터, 전화기, 키보드, 터미널, ATM 숫자판,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심 제거기, 응접실 내 시설의 표면, 공용 업무 장소,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마이크, 마이크 지지대, 믹서 보드, TV 모니터 등), 워키토키, 테이블과 의자, 페니 머신, 사진부스, 자판기 등은 더 자주 살균 처리 하십시오.

- 펜, 재사용 가능한 지도 등 작업자 및 손님 사이에 공유되는 도구를 닦고 소독하도록 지시합니다.
- 손님에게 일회용 지도, 팸플릿,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손님이 개인 전자 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회용 품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 사용 전후에 재사용 제품을 적절히 소독하십시오.
- 장애인에 대한 시설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오디오 헤드셋, 유모차, 기타 장비를 손님에게 대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매번 사용 후 적절히 소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장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특히 폼 형태로 된 귀마개와 같은 부드러운 다공성 표면에 적합한 살균 절차를 정하십시오.
- 작업 장소 터미널에 손 소독제 및 살균 물티슈를 포함한 적절한 위생 제품을 비치하십시오.
- 직원과 손님을 위한 위생 시설이 항상 작동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비누, 종이 수건 및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문과 같이 사람이 자주 오가는 구역에 가능한 한 방문객을 위한 손 소독제와 이동식 세면기를 제공합니다.
- 되도록이면 무접촉 시계, 움직임 감지 조명, 자동 비누 디스펜서 및 페이퍼 타올 디스펜서 등의 핸즈프리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을 장려하십시오.
- 청소용 소독 화학 약품을 선택할 때,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록](#) 목록에 나와 있는 COVID-19 예방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릅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 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필히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권장하는 [천식에 더 안전한 세정 방법](#)을 따르고 적절하게 환기해야 합니다.
- [레지오넬라 폐렴\(Legionnaires' disease\)](#) 및 기타 수인성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시설 가동 중단 후 모든 수도 시스템 및 기능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적절한 PPE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병원균을 공기 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스워핑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해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고효율 미립자 공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근무 시간 내로 배정해야 합니다.

- 작업 공간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청소할 수 있게 적절하게 시간을 변경하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는 제3자인 청소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청소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늘어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경고:** 물리적 거리두기만으로는 COVID-19 전염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직원과 손님, 대기하는 사람들 간에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가림막, 플렉시글라스 장벽 또는 시각적인 표시 사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 손님이 서야 할 위치를 가리키는 바닥 표시 또는 표지판).
- 되도록이면 전시관, 갤러리, 전시 공간 출입 시 이용하는 입구와 출구를 다르게 지정하여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전시관과 작업 공간 주변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교차흐름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도보 이동을 위한 통로, 복도 등을 편도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 입구와 대기 및 관람 장소 그리고 전시 공간 전체에 표지판을 게시하여, 사람들이 물리적 거리 두기, 얼굴 가리개(마스크) 사용, 올바른 손 위생 수칙에 대해 늘 잊지 않게 하십시오.
- 직원 및 방문객이 화장실과 복도와 같은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게 하십시오. 옥내 및 옥외 시설의 붐비는 구역과 혼잡해지기 쉬운 구역에 직원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도록 고객을 안내하게 합니다.
- 시간별 및/또는 사전 예약 발권 시스템을 구현하여 고객 방문에 시차를 확보하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라이브 시연, 동물 쇼 등의 관람 공간을 재구성하여 가정 단위 사이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연에 대한 사전 예약을 구현하고 가정을 적절한 관람 구역으로 안내하는 직원을 배정하십시오.
- 시설에 입장하는 고객 그룹을 가정 단위로 제한하십시오. 같은 가구의 사람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여러 가정이나 다른 가정의 개인들을 동일한 투어 그룹에 결합하는 투어를 중단합니다. 투어 가이드는 고객으로부터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좌석 구역, 테이블, 의자, 벤치 등을 재배열하거나 손님 간에 최소 6피트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허용하도록 좌석을 제거합니다. 손님에게 자신의 그룹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게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고정된 공용 좌석(벤치 등)에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 터치스크린, 손잡이, 버튼, 전화기 및 기타 청취 장치, 손으로 드는 소품, 플립 도어 등이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물은 제거, 폐쇄, 부분 폐쇄 또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일회용 스타일러스 펜, 일회용 커버의 제공을 고려하고, 직원에게 각 사용 후 표면을 모니터링하고 소독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스테이션에는 손 세정제 및/또는 손 씻기 시설을 만들어 방문객에게 전시물과 상호 작용 전후에 사용하도록 요청하십시오. 특히 어린이가 적절한 소독 및 손 세정 없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러한 전시물을 폐쇄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하십시오.
- 손님 및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업무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직원, 안내원, 인턴 및 자원봉사 직원의 제안을 수락하는 쪽을 고려해 보십시오(예: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관리로 변경 또는 원격 근무를 통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 관리).
-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업무 관행을 활용하여 한 번에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직원 수를 제한합니다. 일정 조정(예: 시작/종료 시간에 시간차 두기), 현장 보고 일자를 교대로 배정하기, 작업 공간 출근 복귀를 단계별로 시행하기, 또는 되도록이면 재택근무 계속하기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공간, 작업 공간, 체크아웃 카운터 등을 재구성하여 작업 공간에 있는 동안 직원들이 최소 6피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 휴게실을 재구성, 제한 또는 폐쇄하고 물리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대체 휴식 공간을 조성합니다. 동시에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 수를 제한합니다.
-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 업무 현장에 물품 배달할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되지 않게 합니다.
- 되도록이면 선반과 게시판 같은 운반 보조 용품을 설치하여 사람 사이에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 주차장을 재설계하여 모임 장소를 제한하고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예: 공간 또는 열을 하나씩 걸러 비우기, 비접촉식 결제 등).
- 가능하면 구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박물관, 갤러리,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사항에 준수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셔틀 서비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¹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추가적인 준수 요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캘리포니아/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의 모든 표준을 준수하고 해당 지침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